

#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추진 계획 공고

동물학대, 재난 현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·복지 실현

## I 관련근거

-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(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
- 「동물보호법」 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동물학대 및 재난 현장 등에서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기동물들에 대해 동물구조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진단 치료비, 백신접종 비용(물품 구입비 등)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동물보호 감시체계 구축
- 사업기간: 2026. 1. ~ 2026. 12. ※ [예산소진 시 조기마감](#)
- 사업량: 50마리
- 사업비: 20,000천원(시비100%)
  - 지원단가 : 1마리당 최대 400,000원
- 사업내용: 파주시 관내 위기동물 긴급구조 관련 구조·보호비용 지급
- 지원항목
  - 긴급구조한 동물에 대한 치료비(건강검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 등)
  - 물품구입비(구조용 이동장, 동물용 의약품, 사료 등)

## III 지원대상

- 동물학대 및 재난 현장 등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
- 파주시가 구조한 긴급구조 동물은 인계한 동물병원에 직접 지급

## IV 지원유형

### □ 동물학대 및 긴급 구조 현장

- 학대로 인하여 동물의 생명이 위급하거나,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
- 사고, 전염병 등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

### □ 개농장 등 부적정 다두사육 시설

- 「개사육종식법」에 따라 운영신고하지 않은 개농장 사육시설에서 구조한 경우

### □ 화재·홍수·붕괴 등 재난·사고현장 구조

### □ 애니멀호더

- 애니멀호더에게서 구조한 경우, 파주시 공수의사가 현장에서 긴급구조 동물 선별
- 선별된 긴급구조 동물들에 대해 파주시가 직접 동물병원으로 인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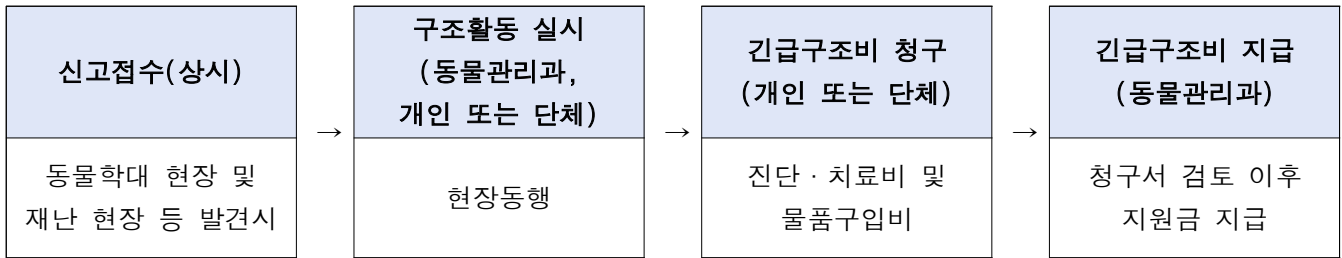
### ※ 제외대상

- 단순 유실·유기 추정된 동물
- 일반 검진, 예방접종, 중성화 등 응급이 아닌 진료
- 소유자 분쟁/반환 가능성이 있는 견에 대해 임의로 치료·장기 보호한 경우
- 증빙자료(현장자료/진단서/영수증 등) 미충족할 경우
- 동일 개체/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지원

## V 추진절차

### □ 담당공무원과 구조활동가가 동물학대 등의 현장 확인 후 구조활동 진행

- ※ 담당공무원과 현장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현장동행이 어려운 경우, 우선 활동가 구조 후 보호장소(병원, 임시보호장소 등)에서 보호중인 견 상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(현장사진, 활동보고서 등)



(치료병원) 파주시 관내 동물병원

(구비서류) 구조활동에 수반되는 진단·치료비, 물품구입비 영수증 등